

2015 세법노트북 소득세법(2판, 1쇄) (추록)(5월 20일)-주민규 저

2015.5.13.	2015	(2 , 1)
.	.	.
	2015.5.20.	

page	행	증 전	수 정
10	하 6	상장지수증권(ETN)의 배당,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	상장지수증권(ETN)의 배당, 파생결합증권(DLS)의 배당 ,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
57	하 4	① 서화(양도일 현재 국내원작자 생존),	① 서화(양도일 현재 국내원작자 생존 하지 않음),
91	상 2	차녀 7세(입양자, 소득없음)	차녀 6세(2015년 입양자, 소득없음)
	상 4	$300,000+(3-2)\times 200,000=500,000$ 원	$300,000+(3-2)\times 300,000+300,000$ (입양) $=900,000$ 원
	하 1	표 밑 주석 추가	* 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15%를 곱하여 계산함
92	상 10	보험료세액공제액 : $[(\textcircled{1}+\textcircled{2})\times 12\%$ 삭제	보험료세액공제액 : $\textcircled{1}+\textcircled{2}$
		① 일반 보장성보험료 : Min[보험료, 연 100만원]	① 일반 보장성보험료 : Min[보험료, 연 100만원] $\times 12\%$
		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: Min[보험료, 연 100만원]	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: Min[보험료, 연 100만원] $\times 15\%$ 개정
93	상 7	• 보험료세액공제 $[800,000+1,000,000(\text{한도})]\times 12\%$ $=216,000$ (삭제)	• 보험료세액공제 : $\textcircled{1}+\textcircled{2}=246,000$ ① 일반보장성 : $800,000\times 12\%=96,000$ ② 장애인전용 : $1,000,000(\text{한도})\times 15\%=150,000$
100	상 3	12만원	13만원 개정
103	하 2	① 세액공제액 : $275,000+(3,786,750-500,000)\times 30\%=1,261,025$	① 세액공제액 : $715,000+(3,786,750-1,300,000)\times 30\%$ $=1,461,025$
	하 1	② 한도액 : 660,000	② 한도액 : 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740,000-(45,000,000-33,000,000)\times 8/1,000 \\ =644,000 \\ -660,000 \end{array} \right.$
108	상 9	12만원 (선택) ^{*1)}	13만원 (선택) ^{*1)}
119	하 5	•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(특정주식 A)	• 부동산과다보유 특정업종법인 의 주식(특정주식 B)
128	상 9	자산을 양도한 경우	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
	상 11	②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	② ① 이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

P90 수정사항

IV. 소득세법상 세액공제

구 분	내 용	
공제대상	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)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	
자녀세액공제액	기본공제대상 자녀, 입양자, 위탁아동 수	자녀세액공제액
	1명	연 15만원
	2명	연 30만원
	3명 이상	연 30만원+2명 초과 1명당 연 20만원



IV. 소득세법상 세액공제

1. 자녀세액공제 개정 (2014년 귀속분부터 적용)

구 분	내 용		
공제대상	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·이하 '공제대상자녀')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		
자녀세액공제액	구 분(①+②+③)	자녀세액공제액	
	① 공제대상자녀 수	1명인 경우	연 15만원
		2명인 경우	연 30만원
		3명 이상인 경우	연 30만원+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
	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	1명 초과 1명당 연 15만원	
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	1명당 연 30만원		

2.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 (종전 : 납입액 한도 연 400만원)

구 분	내 용
공제대상 및 공제한도	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 납입액*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연금계좌 세액공제액	연금계좌세액공제액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 \times 12\%$ ① $\text{Min}[\text{연금저축계좌 납입액, 연 400만원}] + \text{퇴직연금계좌 납입액}$ ② 한도액 : 연 700만원

* 연금계좌 납입액 :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

-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
-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



2.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 (2014.1.1. 이후 연금계좌납입분부터 적용)

구 분	내 용
공제대상	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 납입액(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제외)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연금계좌 세액공제액	연금계좌세액공제액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 \times 12\%(\text{또는 } 15\%^*)$ ① $\text{Min}[\text{연금저축계좌 납입액, 연 400만원}] + \text{퇴직연금계좌 납입액}$ ② 한도액 : 연 700만원 *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15%를 적용함

P102 수정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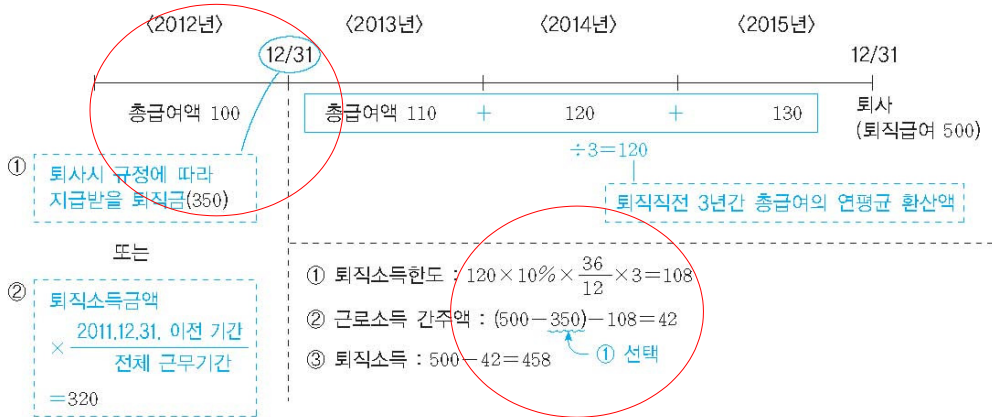
근로소득 세액공제	근로소득자	<p>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</p> <p>(1) 상용근로자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$</p> <p>① 세액공제액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*</th> <th>근로소득세액공제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만원 이하</td> <td>산출세액* × 55%</td> </tr> <tr> <td>50만원 초과</td> <td>275,000 + (산출세액* - 50만원) × 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종합소득 산출세액 × $\frac{\text{근로소득금액}}{\text{종합소득금액}}$</p> <p>② 한도액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총급여액</th> <th>세액공제 한도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,500만원 이하</td> <td>66만원</td> </tr> <tr> <td>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</td> <td>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66\text{만원} - [(\text{총급여액} - 5,500\text{만원}) \times 1/2] \\ 63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6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</td> </tr> <tr> <td>7,000만원 초과</td> <td>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63\text{만원} - [(\text{총급여액} - 7,000\text{만원}) \times 1/2] \\ 50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26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근로소득산출세액 1,783,334원인 경우</p>	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*	근로소득세액공제액	50만원 이하	산출세액* × 55%	50만원 초과	275,000 + (산출세액* - 50만원) × 30%	총급여액	세액공제 한도액	5,500만원 이하	66만원	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	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66\text{만원} - [(\text{총급여액} - 5,500\text{만원}) \times 1/2] \\ 63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6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	7,000만원 초과	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63\text{만원} - [(\text{총급여액} - 7,000\text{만원}) \times 1/2] \\ 50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26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
		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*	근로소득세액공제액													
50만원 이하	산출세액* × 55%															
50만원 초과	275,000 + (산출세액* - 50만원) × 30%															
총급여액	세액공제 한도액															
5,500만원 이하	66만원															
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	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66\text{만원} - [(\text{총급여액} - 5,500\text{만원}) \times 1/2] \\ 63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6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															
7,000만원 초과	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63\text{만원} - [(\text{총급여액} - 7,000\text{만원}) \times 1/2] \\ 50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26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															
(2) 일용근로자 : 산출세액 × 55%																



근로소득 세액공제	근로소득자	<p>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</p> <p>(1) 상용근로자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$ 개정 (2014년 귀속분부터 적용)</p> <p>① 세액공제액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*</th> <th>근로소득세액공제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30만원 이하</td> <td>산출세액* × 55%</td> </tr> <tr> <td>130만원 초과</td> <td>715,000 + (산출세액* - 130만원) × 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종합소득 산출세액 × $\frac{\text{근로소득금액}}{\text{종합소득금액}}$</p> <p>② 한도액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총급여액</th> <th>세액공제 한도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,300만원 이하</td> <td>74만원</td> </tr> <tr> <td>3,3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</td> <td>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74\text{만원} - (\text{총급여액} - 3,300\text{만원}) \times 8/1,000 \\ 66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4,300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</td> </tr> <tr> <td>7,000만원 초과</td> <td>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66\text{만원} - (\text{총급여액} - 7,000\text{만원}) \times 1/2 \\ 50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7,032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근로소득산출세액 1,383,334원인 경우</p>	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*	근로소득세액공제액	130만원 이하	산출세액* × 55%	130만원 초과	715,000 + (산출세액* - 130만원) × 30%	총급여액	세액공제 한도액	3,300만원 이하	74만원	3,3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	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74\text{만원} - (\text{총급여액} - 3,300\text{만원}) \times 8/1,000 \\ 66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4,300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	7,000만원 초과	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66\text{만원} - (\text{총급여액} - 7,000\text{만원}) \times 1/2 \\ 50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7,032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
		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*	근로소득세액공제액													
130만원 이하	산출세액* × 55%															
130만원 초과	715,000 + (산출세액* - 130만원) × 30%															
총급여액	세액공제 한도액															
3,300만원 이하	74만원															
3,3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	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74\text{만원} - (\text{총급여액} - 3,300\text{만원}) \times 8/1,000 \\ 66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4,300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															
7,000만원 초과	Max $\left\{ \begin{array}{l} 66\text{만원} - (\text{총급여액} - 7,000\text{만원}) \times 1/2 \\ 50\text{만원} \end{array} \right.$ ↳ 7,032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○															
(2) 일용근로자 : 산출세액 × 55%																

P111 수정사항

사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(단위 : 백만원)



사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(단위 : 백만원)

